

Ⅲ. 고용허가서의 발급

1 내국인 구인신청

(1) 근거법령

법 제6조(내국인 구인 노력)

-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(이하 “직업안정기관”이라 한다)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·지원하여야 하며,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10.9.]

시행규칙 제2조(직업소개)

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(이하 “직업안정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 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4.12.]

법 제8조(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)

-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.>

시행령 제13조의4(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)

2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. 다만,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시행규칙 제5조의2(내국인 구인노력 기간)

- ① 영 제13조의4제2호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

기간을 말한다.

1. 농업·축산업 및 어업: 7일

2. 제1호 외의 업종: 14일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을 3일로,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을 7일로 각각 단축할 수 있다.

1.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 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

2.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

가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(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)

나.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,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

다.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

[전문개정 2015.12.30.]

(2) 구인신청 방법

■ Work-Net 등록

- 내국인 구인신청은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 직업안정기관의 장(고용센터)에게 하여야 함
-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센터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인 신청한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

■ 모집직종

- 구인신청 시 모집직종은 반드시 외국인력 고용가능 직종에 적합한 경우여야 함
- 사무직이나 관리직 등으로 구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상의 내국인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
(3) 구인노력 방법

■ 구인노력기간

- 제조업·건설업·서비스업: 원칙 14일, 예외 7일
- 농축산업·어업: 원칙 7일, 예외 3일

- (원칙) 구인노력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(7일) 이상
 - * '18.1.1.에 구인신청을 하였다면, '18.1.15.부터 4.14.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가능. 다만, 구인신청한 날보다 워크넷 인증이 늦어질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지원과에 신속처리 협조 요청
 - 예시) '18.8.1.에 10명의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였으나, '18. 8. 14.까지 1명의 내국인도 채용하지 못하였다면, '18.8.15.부터 '18.11.14.까지 1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8.15. 2명, 9.15. 2명 등 여러 번 신청도 가능
- (예외) 다만, 아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(3일)로 단축(워크넷 등록은 필수)
 - ①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,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(아래 각목에 해당)
 - 가. 고용센터에서 개최한 '구인구직 만남의 날'에 참석(2개월 이내)
 - 나. 고용센터, 지자체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경우
 - 다. 구인공고(인터넷 공고 포함) 등을 통해 직접 면접을 한 경우로서 이력서, 면접장소, 면접일시, 연락처 등이 확인된 경우
 - ②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(최근 2개월 내로 제한)
 - * 아래 가, 나, 다에 해당되는 매체 외의 인터넷사이트는 불허
 - * 매체 공고 내용에 구인인원, 모집직종, 직무내용 등이 명확해야 함
 - 가. 신 문: 신문에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
 - 조선일보, 한겨레, 매일경제 등 종합/경제 일간신문 및 무가지 (생활정보지 등)

나. 잡 지: 잡지에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

-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<http://mcst.go.kr>) > 실국마당 > 문화콘텐츠산업 > 정기간행물>'법인명 검색'을 통하여 간행물의 종류 확인

다. 방 송: 계약서 또는 영수증 서류

- 텔레비전, 라디오 방송 및 데이터방송 및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등

■ 구인노력의무 충족여부의 판단

-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
-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알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

■ 내국인 구인노력 활성화 방안(외국인력정책과-2253호, 2012. 7.19.)

-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, 내국인 미채용 시 취업알선 부서(취업지원과)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

*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거부 기준

- ① (알선거부)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
- ② (채용절차 미진행)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알선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(면접을 보지 않았다면 채용절차 미진행으로 판단)
※ 특별한 사유: 구직자의 면접 거절, 연락두절, 사업주의 폐업·휴업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- ③ (합리적 이유 없는 채용거부) 구인자가 제시한 채용요건을 갖추고,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내국인 구직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

- 정당한 이유 없는 미채용 사업장은 채용거부로 처리하고, 구인노력 실적은 점수제 등과 연계, 인센티브 제공



Tip

내국인 구인 신청의 취업지원과 알선에 대해 채용결과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EPS시스템 상 고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, 취업지원부서에 채용결과 처리를 완료토록 안내 후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. 또한 타 기관 알선 건은 고용센터 자체적 채용결과처리가 불가하므로 해당 알선기관에 결과 처리 안내하여야 함.